

농업노동재해보험법 법제화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1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개방농정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지난 기간 계속된 개방농정은 농가소득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그에 따라 농가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농업노동량과 시간이 증가하고, 농약·농기계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진 반면 농가 인구는 노령화되어 농업노동재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방농정의 필연적 결과물인 농업노동재해율은 현재 7.8%를 넘어서고 있어 산업재해율 0.8%의 열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약중독의 심각성은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농부중으로 일컬어지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도 조사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70% 이상의 농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농민 건강의 현실은 농업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농민이 농업노동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해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휴업결손, 장애급여, 사망 시 유족 보상 등을 본인부담 없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법입니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된 현재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토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간산업인 농업을 유지하자면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작업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는데, 농민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농업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모두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면, 정부는 마땅히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 법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농특세나 농림부 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농재법은 농업노동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 모두에 폭넓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 농업노동 사고

1.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2. 농업과 관련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해 생긴 상해도 마땅히 농업노동재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업노동을 준비, 진행, 마무리, 혹은 이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이 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농업노동 질병

농업노동재해를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질병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현재 앓고 있는 많은 질환이 개방농정으로 인한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 장기간의 농업노동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 법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장기간의 농업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에 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농업노동으로 인한 허리, 다리, 어깨 통증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2. 급·만성 농약중독 역시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 법의 보호 안에 두어야 합니다.

3. 렙토스피라, 쓰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등 토양성 병해충에 의한 질병.

4. 버섯, 화훼, 축산 등의 농업에 종사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직업성 호흡기질환

5. 경운기·트랙터·등짐형농약살포기 등의 진동공구에 의한 소음성 난청과 진동장해.

6. 가축이나 작물에 의해 매개된 질병.

4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에 따른 급여와 장애, 사망 시 급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만 생각한다면 자부담이 있기는 하나 사실 농업인안전공제를 통해서도 일정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 근본 이유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사망급여 보장을 통해 젊은 농민도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 요양급여 : 치료비 및 요양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농업노동 결손급여(휴업급여) :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결손을 급여(70%)로 지급합니다.(급여 기준액은 농협월보에 게재되는 농사 일용노임 평균액을 적용)

3. 장애급여 : 농업노동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 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4. 간병급여 :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5. 사망급여 :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유

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5 이 법은 모든 농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체 OECD 국가 중 18개국이 기간산업으로써의 농업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면서 강제적용 방식으로 이미 유사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법은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모든 농민, 즉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농민, 자영 농민, 임차농민과 임노동에 종사하는 농민에게까지 강제적용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상 연령은 농업인 안전공제에서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영농 연령인 80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단, 70세 이상은 50%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재원은 정부 50% 농협 50%의 부담으로 마련하고, 농민의 자부담은 없어야 합니다

1.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업이 갖는 식량안보 및 공익적 의미를 인정할 때 이제라도 농업노동재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2. 농업·농민의 대표조직으로써 농가경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농협이 농민 부담을 대신하는 것은 시대적 임무입니다. 농협법 57조 1항에 의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 농업과 농민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있는 지금 농민의

건강을 위해 특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농민의 보험료 본인부담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형평성 문제와 보험법의 특성에 비추어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본인부담금을 두게 된다면, 시행 즉시 인상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보험금 징수에 따른 기관 설립의 문제, 법 시행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농민 소득과약 문제 등으로 본 법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7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관리운영은 농협 공제사업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농업노동재해 보험법 운용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구 및 전문역량과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농협 공제사업부가 당분간 이 법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과 재정 절감 원칙에서 타당합니다. 또한 농협이 재원을 부담하는 만큼 권리와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사고 이전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향후 5년 이내에 농민 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그 역할과 함께 이 법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농민이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과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빨리 이 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